

국제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2017. 10. 25(수)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CONTENTS

● 축 사

국회의원 조배숙	iii
정의당 대표 이정미	iv

● 사 회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1.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 민주화 방안	1
남희섭 변리사	
2. The KOREA- US FTA: What's the latest?	13
Burcu Kilic (Public Citizen)	
3. RCEP as a KORUS Plus	19
Sanay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 론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29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31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35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단국대 강사)	37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4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55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65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인간을 위한 경제협정이란, 어쩌면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모순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경제가 국경을 지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중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과 한국에서 이 행사를 준비한 분들은 진정한 세계인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세계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제도는 자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길항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인 RCEP 또한 그렇게 만들어질 제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세계인들이 더 좋은 제도, 더 많은 아시아인들을 위한 통상협정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아시아인은 잘 듣는 약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아시아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 창조력을 발휘하려는 아시아인들은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아시아인들은 ISD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세계인들이 원하는 아시아인의 권리는 RCEP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수많은 통상협정에서 소외돼 온 아시아인의 권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RCEP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조 배 숙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축 사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역내 포괄적 경제협정(RCEP, 아르셉) 등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가 재벌공화국이었다면, 통상정책에서 있어 지난 30년은 FTA 만능시대였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이익을 위해 농수산축산업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의 성과 또한 일부 재벌대기업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FTA를 체결할 때마다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GDP가 늘어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은 무수히 넘쳤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다. FTA 수혜자는 다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대기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을 통해 60년 재벌공화국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로 그 재벌공화국을 지탱한 통상정책 또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과 할 것입니다.

마침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되고,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을 이윤동맹으로 바꾸기 위해 노골적으로 장삿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미 FTA의 설계자였던 김현종 본부장이 재기용되어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시대에 나라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상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TPP를 대체하여 추진되고 있는 RCEP 또한 우리가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하고 상대방의 개방을 이끌어낸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농업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소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 등 1차 산업을 일방적 희생시키고,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통상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통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관료들의 책임지지 않는 엘리트주의 또한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지난 제가 지난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분야에서 통상관료들의 개별협상 정황을 밝히기도 했지만, 소위 전문성을 무기로 한 통상관료들의 전횡은 60년 대한민국 적폐 중 적폐이며, 국민 주권의 기본적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촛불시대,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통상관료의 엘리트주의 종식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통상정책에도 불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정의당이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 대표 **이 정 미**

주제발표 1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 민주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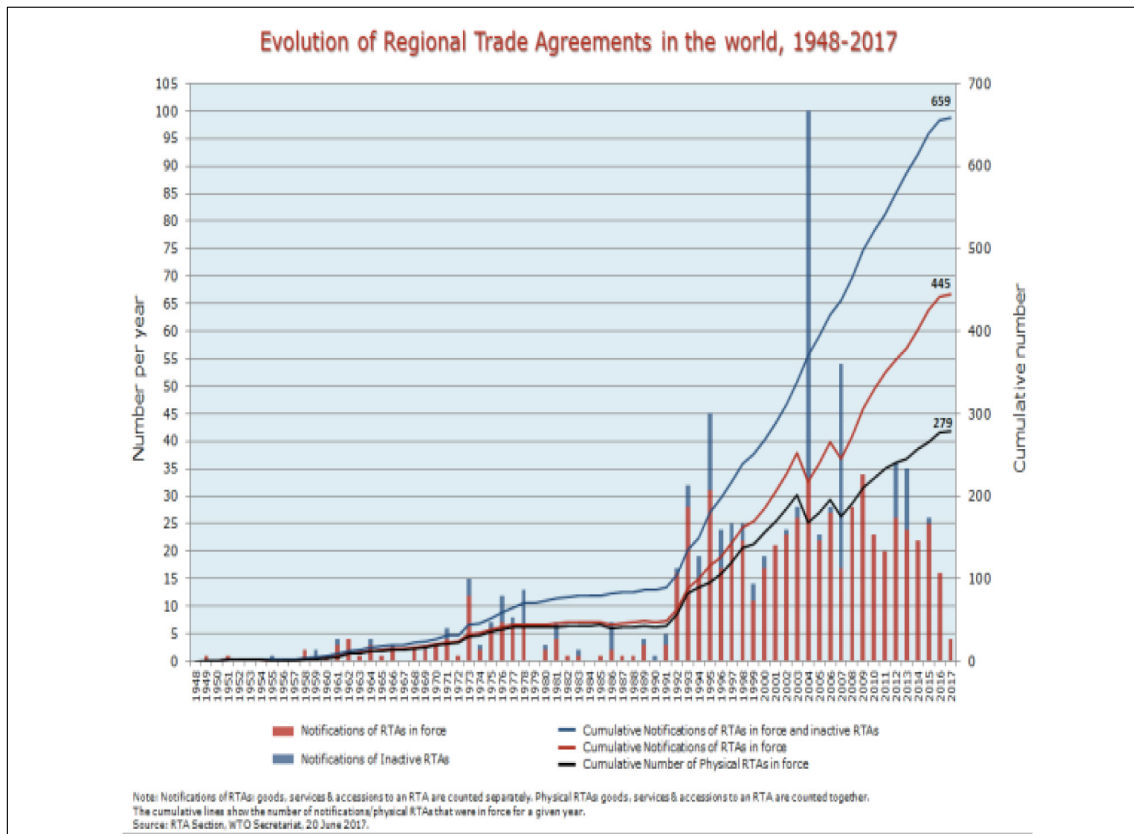
남 희 섭 변리사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 민주화 방안

남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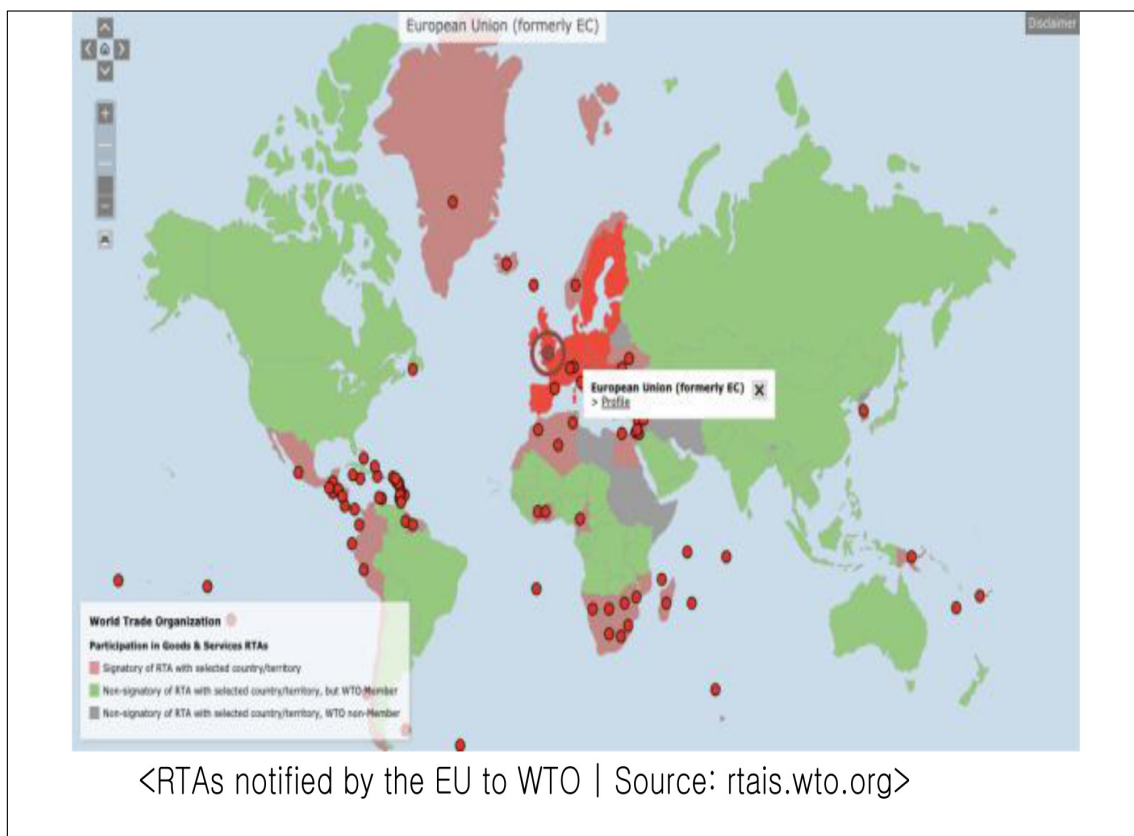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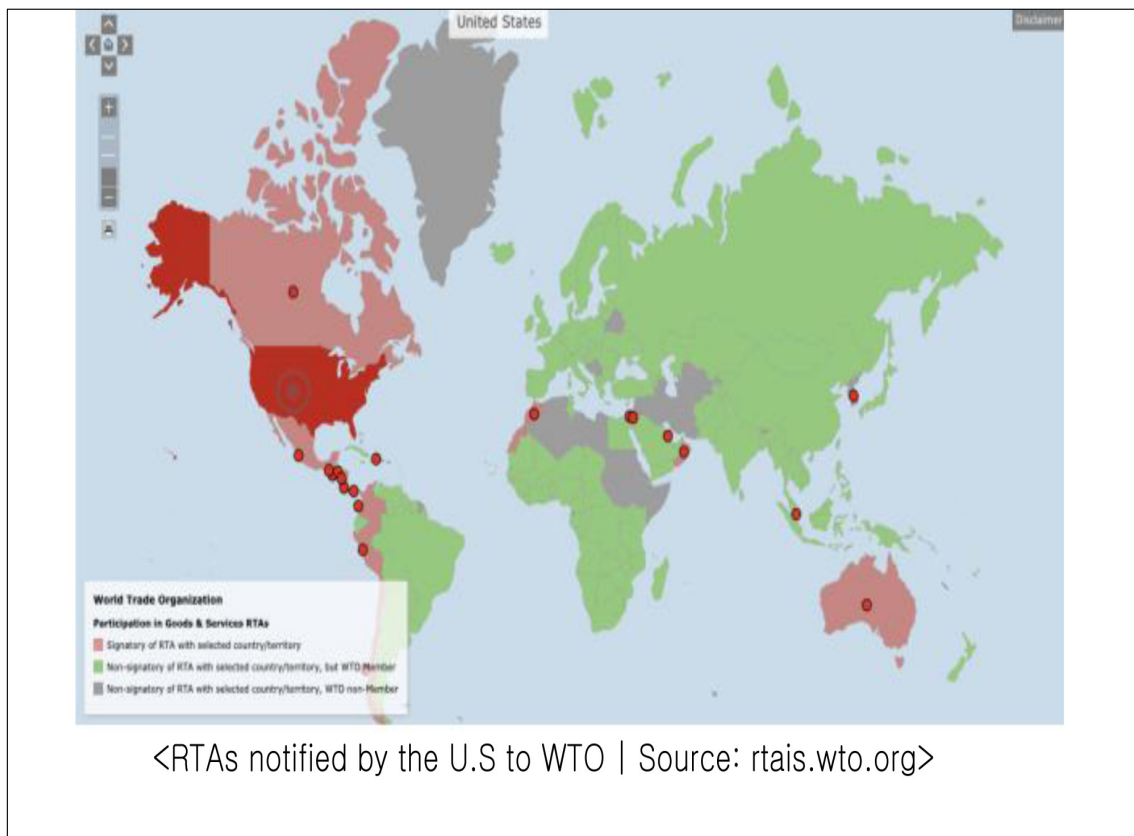
FTA – 통상 프레임을 넘어서

-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드러난 것처럼, FTA는 경제적 영향 중심으로 평가됨.
- 이러한 평가 프레임으로는 FTA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음.
- 단기간에 워낙 많은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 담당자도 협상 따라가기 바쁠 정도.
- 국회나 시민사회의 개입은 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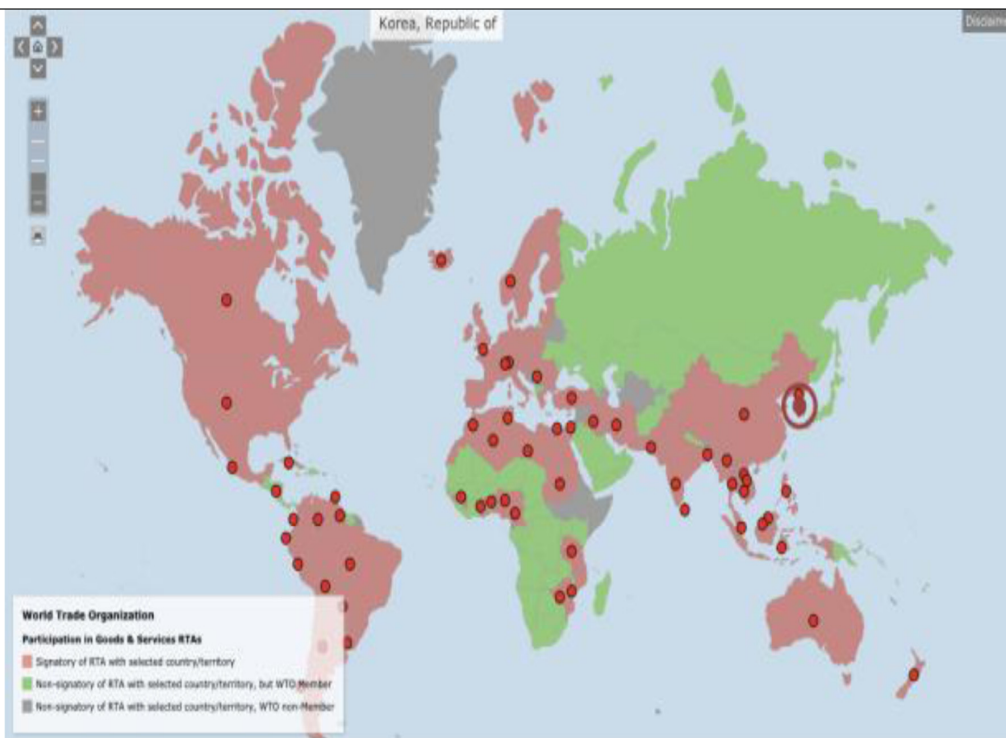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 주요 거점 경제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
-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로드맵’에서는 기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TPP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논의의 핵심축(linchpin) 역할 수행, 산업·자원·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신흥국, 자원부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이라는 새로운 FTA 추진 전략을 제시 ... 앞으로도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우리나라 FTA 정책)
-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FTA가 2003년 이후 체결. 현재 15건 52개국과 FTA 발효,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 FTA 협상 진행 중





<RTAs notified by Japan to WTO | Source: rtais.wto.org>



<RTAs notified by S. Korea to WTO | Source: rtais.wto.org>

FTA – 어떻게 평가되는가?

-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평가(통상절차법 제9조 제2항)
- 협상이 끝나면 영향평가(국내 **경제**, 재정, 관련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실시(통상절차법 제11조)
- 이행상황 평가(**경제적 효과**, 국내 대책의 실효성, 공동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통상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평가는 누가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기 업무를 자기 평가.
- 법률상 평가 의무도 경제적 분야에 집중.

인권 문제로서의 FTA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통상조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조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2년마다 통상조약에 대한 인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 민주화와 투 명성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SHINGTON, D.C. 20508

May 11, 2006

His Excellency Kim Jong-Ho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oul, Korea

Dear Ambassador Kim:

As discussed in our meetings in Washington on April 17-18, we are planning to exchange proposed negotiating texts prior to our first round of negotiations. In preparation, I would like to outline the following important points about the handling of documents in the context of our FTA negotiations, and confirm that you agree with this approach:

- First, negotiating documents will be held in confidence by both sides. This means that the documents may be provided only to (1)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members of our respective legislative branches, or (2) persons outside government who participate in the domestic consultation process who have a need to review or be advised of the information in these documents. Anyone given access to the documents will be alerted that they cannot share the documents with people not authorized to see them. Both sides plan to hold these documents in confidence for thre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 Both sides plan to hold negotiating documents in confidence for thre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 KORUS went into effect on March 15, 2012

韓부총리 "한미FTA 내용 최대한 공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입력: 2006.04.27 15:0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06042714554000684&type=1>

복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협상 내용을 최대한 공개해야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협상 내용은 모두 즉시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미국 측에서 (협정 발효 후) 10년 비공개를 요구해서 3년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에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상 17개 분과설치 합의(종합)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6-04-19 04:30 | 최종수정 2006-04-19 04:30

양측은 이와함께 최종 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진행중 교환한 협상문서는 '원활한 협상 진행'과 '제3국에 협상 전략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협정 발효후 3년동안 비공개기로 했다.

다만 보안을 전제로, 국회 등 관련기관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측과 합의 후 주미대사관 문화홍보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3년 비공개 합의가 비밀합의 등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협상 때 주고받는 제안과 역제안을 그때마다 공개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상식이고, 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C - Sustainable Development, Bilateral Trade Relations
The Director

Brussels, 15 October 2009

The Honourable Lee Hye-min
Deputy Minister for Trade & Chief FTA negotiat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oul, Korea

Dear Deputy Minister Lee:

I am writing to remind you that maintaining confidentiality of documents in the context of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is essential to limit any adverse impact their disclosure may have on the future and ongoing FTA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Since the texts of the Korea-EU FTA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in the next week,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you agree with the approach to hold the negotiating documents in confidence for three years after its entry into force and **that both sides will consult prior to public disclosure.**

- The EU and Korea agreed to hold negotiating documents in confidence for three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 Both sides will consult prior to public disclosure
-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effect on July 11, 2011 (provisionally), and December 13, 2015

통상민주화와 투명성 (2)

- 국회는?
- 한미 3년 비공개 합의 → 발효 후 3년 경과하기 전이라도 국회에는 협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the negotiation documents may only be provided to governmental officials including members of legislative branches).
- 정부는?
 - 1번 항목: 청구하신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RCEP – 기업들 의견만 평향적으로 청취

-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는 단 한차례.
- 그것도 형식적인 공청회를 5년 전에 개최한 것이 전부.
- 2016년 시민사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산통부는 거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 개최일시: 2012. 10. 24. (장소: 코엑스)
- 2시간 반만에 끝난 공청회(공청회 개최 시간: 10:00~12:30)
- 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만 4명만 발제.

산통부가 RCEP 협상을 위해 기업들 의견을 청취한 내역

-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 2013년 12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전기, 섬유, 의료기기, 유통, 문화콘텐츠, 금융 등.
- 전자상거래 분야 업계 간담회: 2013년 6월, 소프트웨어, 게임, 온라인쇼핑, 인터넷기업 등.
- 유통업계 간담회: 2016년 3월
- 제조업계 간담회: 2016년 4월
- 비관세조치 관련 업계 간담회: 2017년 4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업계
- 해외 인력진출 및 FTA 연계 방안 간담회: 2017년 7월
- 제지업계 간담회: 2017년 7월
- 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 2017년 7월

국경을 넘어서 한미 FTA – RCEP

- 한미 FTA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다른 FTA에 적용하는 모델로 삼고 있음(지재권, 투자)
- 한국 정부의 이러한 협상 전략은 USTR의 경쟁적 자유화 전략이 말리는 결과를 초래.
- 도미노 효과를 노리는 연쇄반응 전략(creation of chain reaction)
- 전 USTR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이 밝힌 경쟁적 자유화 전략
 - 미국과 일단 FTA를 체결한 국가는 향후 FTA에서 미국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게 만드는 것.

Thank You

주제발표 2

The KOREA– US FTA: What's the latest?

Burcu Kilic (Public Citizen)

주제발표 2

The KOREA– US FTA: What’s the latest?

Burcu Kilic (Public Citizen)

The Korea FTA is the second-largest such agreement, after 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It went into effect on March 15, 2012, reducing and eliminating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The KORUS FTA covers a wide range of trade and investment issues . It slashed tariffs, tightened intellectual-property rights and opened up South Korea’s services market. KORUS FTA’s largest commercial effects are microeconomic in nature.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fic industries, the agreement may have a noticeable impact even if its economy-wide effects are modest. That’s why, it benefited US corporations without producing gains for US workers.

In addition to its economic implications, the KORUS FTA has diplomatic and security implications.

Post Implementation problems

Trade between America and South Korea has indeed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The US economy has been the strongest in the world, while South Korea’s economy has slowed, thus hurting exports.

American goods exports fell by \$3bn between 2011 and 2016. The deal also suffered teething problems. As tariffs fell, some US companies have argued that certain aspects of the KORUS agreement are not being implemented appropriately, citing issues related to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express delivery shipments, data transfers, and pending auto regulations. American carmakers griped that South Korean regulators were erecting other barriers.

Most incendiary for this administ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ccused of devaluing its currency for competitive advantage.

President Trump called the KORUS FTA a “disaster”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denounced it in April as “horrible deal” that has left America “destroyed.”

What the administration will do about the pact and when remains a mystery. The KORUS FTA termination threat as possibly an attempt to achieve gains through regulation of imports of South Korean steel, ships, and car. It is very 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withdrawal threat was a strategy to force south Korea to come to the table and engage with the US on KORUS implementation issues and possible amendments.

In fact, the US wants a renegotiation for a sensible upgrade. A revised version would include new rules on digital trade and e-commerce, and more transparency over currency intervention.

The leaders of congressional trade committees have warned the administration to tread cautiously in attempting to modernize the KORUS, insisting that Congress be closely consulted to ensure a “united front” in pursuit of any changes.

The U.S.-Korea bilateral alliance is too important to walk away from. Koreans should closely follow the NAFTA renegotiations, focusing on issues that may have direct impact on possible proposed amendments that the US may be seeking in KORUS, including rules of origin, e-commerce, currency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

The withdrawal threat – while it had been taken off the table for the time being – is still credible and potentially imminent. But Korea should not give in to that threat.

Though Trump pays lip service to Fair Trade, the only specific policy he’s come out with that points to his interpretation of what fair trade means is that other countries should pay more for American drugs, which he announced following a meeting with PhRMA,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rade group. Trump has been an open critic of fair wages for American workers, arguing the minimum wage is too high. His companies have consistently arranged licensing deals with countries who are flagrant violators of human rights.

Fair Trade, contrary to Trump’s rhetoric does not just mean that one side wins. It means we all do better because we all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our voices heard. With the defeat of TPP, civil society said loud and clear that our voices will be heard for fair trade. Both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should take this to heart.

주제발표 3

RCEP as a KORUS Plus

Sanay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KORUS+ trade negotiations: RCEP, TISA, WTO, (& KORUS renegotiation?)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25/10/2017

1

Some current Korean trade negotiations with KORUS+ proposals

- Korea is currently negotiating: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ASEAN+: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New Zealand
 - Supposed to finish in 2017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 Australia,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EU, Hong Kong, Iceland, Israel, Japan, Korea, Liechtenstein, Mauritius, Mexico,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anama, Peru, Switzerland, Taiwan, Turkey and USA
 - Supposed to finish in 2016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164 member countries
 - WTO Ministerial Conference: 10-13 December 2017 in Buenos Aires:
 - Domestic regulation disciplines and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aiming to conclude by then
 - Mandate to negotiate ecommerce rules agreed there?
 - KORUS renegotiation?

2

Some of the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goods chapters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	In current WTO negotiations?
Goods chapter		NA		
Trade in GMOs	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hapter		NA		
Annex on wines and spirits	Y			
Annex on ICT	Y			
Annex on pharmaceuticals	Y			
Annex on cosmetics	Y			
Annex on medical devices	Y			
Annex on proprietary formulas in pre-packaged foods	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chapter		NA		
Lots of rules	Y			

3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services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In current WTO negotiations?
Hard domestic regulation disciplines:	Only applies to sectors liberalised	[proposed to apply to all sectors, even those not liberalised]	[Seems to apply to all sectors, even those not liberalised]	[Only applies to sectors liberalised, see for example Chair's texts from 2009 and 2011]
Objective	N	Y (but not for technical standards): [with slight safeguard in footnote3]	[Y]	[Y]
Transparent	N	Y (but not for technical standards): [with slight safeguard in footnote3]	[Y]	[Y]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N	[Y]	[Y]	[Y]
Not restrict the supply of the service	N	[Y]	[Y]	[Y]
Licensing fee must be	Y: reasonable, transparent and does not, in itself, restrict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with footnoted exceptions)	Y: reasonable, transparent and does not, in itself, restrict the supply of the relevant service (with footnoted exceptions)	[Y: reasonable, transparent and commensurate with the administrative costs incurred]	[Y: reasonable and do not restrict the supply of the service (with footnoted exceptions)]
Licence once granted, enters into effect without undue delay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and conditions	N	Y	N	[Y]

4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financial services & ecommerce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In current WTO negotiations?
Financial services chapte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applies to financial services chapter?	Y			
Ecommerce chapter				
Cross-border data flows must be allowed	Y	[Y]	[Y?]	[Y]
Restrictions on local server requirements	Y	[Y]	[Y?]	[Y]
Restrictions on requiring transfer/access to source code	Y	[Y]	[Y?]	[Y]

5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IP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In current WTO negotiations?
Intellectual property (IP) chapter		NA		
Exclusivity applies to biologics?	Y			
Data exclusivity on medicines	N		[Y]	
Client-attorney privilege extended to all IP advisors	N		[Y]	
15 years of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TRIPS is 10 years)	N		[Y]	
Effective measures to curtail repetitive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network	N		[Y]	

6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investment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In current WTO negotiations?
Investment chapter				
Investment agreement includes with all levels of government	N		[Y]	
Restrictions on requiring investors to use local technology	Y	[Y]		[Y (in 'ecommerce')]
Restrictions on capping voluntary licence royalties	Y		[Y]	
Restrictions on requiring local headquarters	N		[Y]	
Restrictions on requirements to hire locals	N		[Y]	[Y? (in 'ecommerce')]
Restrictions on requirements to do local R&D	N		[Y]	

7

Some other KORUS+ proposals in these negotiations

WTO+ provisions which are not in KORUS	In TPP?	In TISA?	In RCEP?	In current WTO negotiations?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Y			
Environment chapter				
Restrictions on fishing subsidies	Y			Y

8

Thank you

sanya@twnetwork.org

9



토론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단국대 강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1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MEMO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2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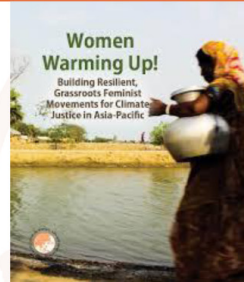


Diyana Yahaya
Programme Officer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bout APWLD

APWLD is Asia and Pacific's feminist, membership driven network.

- 211 members in 26 Asia Pacific countries
- For 31 years APWLD has been working to advance women's movements **claim and strengthen women's human rights and achieve development justice**
- APWLD members are rural women, indigenous women, urban poor women, women migrants, women farmer, Dalit women, women living with disability.
- Women, especially marginalized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trade agreements and economic policies then men.



How trade agreements impact on women

- Companies participating in global value chains rely on the devaluation of women's work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 Evidence on how the cuts of public services impacts women. Rationalisation of social safety nets and essential public services is also made possible by the availability of women's unpaid labour to fill the gaps in care.
- Growth in export-oriented industries has expanded job opportunities for women, these jobs have tended to be concentrated in labour-intensive, low value-added, and low-wage export industries.
- We have also seen the bio-piracy of seeds/local knowledge that traditionally belonged to women or kept by women.
- For the expanded opportunities to come to women with trade liberalisation, governments need to intervene with supportive fiscal, wage and industrial policies.

Women's Concerns on RCEP

-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could restrict future affirmative action that has a financial impact on companies and amounts to appropriation. Example: gender pay gap and requiring minimum numbers of women as shareholders.
- 'National treatment' could prevent government from preferencing local women over foreign companies. Examples: some of you have introduced tax incentives for women land-owners or co-owners to encourage local women's ownership for land as a way to ensure women owns some land.
- The impact on various other sectors will also impact on women.



Additional information

APWLD briefer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ttp://apwld.org/updated-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briefer/>

Submission to Australian Parliamentary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On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http://apwld.org/submission-to-australian-parliamentary-joint-standing-committee-on-treaties-on-the-trans-pacific-partnership-agreement/>

For more information: diyana@apwld.org

	$\frac{E}{c}$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4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단국대 강사)

RCEP 대응 : 농업분야 토론

- 아세안 + 6개국 RCEP은 역내 GDP가 23조 8000억 달러로 미국이 탈퇴한 TPP-11(10조 2000억 달러)의 2배 이상이고, 역내 교역 규모 9조 6000억 달러, 인구 35억 명으로 그 영향이나 잠재력이 TPP를 능가한다고 평가됨
- 역내에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농산물 수출 국가가 다수 있고, 중국이나 아세안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산되는 농산물 및 식품 소비의 유사성이 있어 RCEP 타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20차에 이르는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어려움
 - 이에 본 토론은 언론이나 국내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농업 부문 협상 시의 쟁점과 토론자 나름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함

쟁점 1) RCEP의 개방 수준에 대한 오해

- 일부 언론 매체나 정책 보고서에서는 TPP의 개방 수준은 높으나, RCEP의 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방 수준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는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 제시

- 그러나 RCEP 참여국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RCEP의 개방수준도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해 기존에 RCEP 협상국과 체결한 FTA의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2년 8월 확정된 RCEP 협상지침에도 제시되어 있음 : 8가지 기본 지침 중 두 번째 지침이 기존 ASEAN+1 FTA보다 상당히 개선된 협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임
- 지난 협상이 국가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중국이나 ASEAN 등은 조속한 타결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결실’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
-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한-ASEAN FTA, 한-중 FTA의 개방수준이 우려했던 것보다 높지 않아 두 FTA의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음
- 다음의 관세개방도 구간별 품목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개방도가 낮은 것은 해당 품목이 이슈가 되는 한-중 및 한-ASEAN FTA의 개방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임(김영훈 외, 2016)

〈표 1〉 관세개방도 구간별 품목

관세개방도	81-100%	61-80%	41-60%	21-40%	0-20%
품목	밀,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호두	낙농품	오이, 수박	옥수수, 대두, 포도, 닭고기	쌀, 보리, 메밀, 녹두, 팥,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 배추, 당근, 딸기, 양파, 마늘, 고추, 생강, 꿀, 녹차, 인삼, 밤, 대추, 잣

자료 : 김영훈 외(2017) 편집 후 인용

주 : 과일 및 채소는 신선을 기준으로 하였음

- 그러나 RCEP의 개방수준은 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김영훈 외,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있어 지리적 인접성, 식품 소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한-ASEAN FTA, 한-중 FTA보다 더욱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리라 예상됨. 이는 RCEP의 개별 국가간 FTA보다 상위 협약으로서 위상을 가지기 때문임
-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쌀 시장에 개방에 관심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쌀 양허를 요구할 수 있고, 중국과 ASEAN 여러 국가들에 대한 개방수준 확대는 국내 원예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김영훈 외, 2016)에 의하면 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리, 울무, 고구마, 녹두, 팥 등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 과채/채소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신선 과일의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

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응방안

- 김영훈 외(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국별 양자 간 민감품목을 점검하고 세번변경 등의 방식으로 민감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상에 주의 필요
- 다른 한편으로 일부 언론이나 보고서를 통해 RCEP의 개방수준이 왜곡 전파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쟁점 2) 스파게티볼 완화 효과와 비관세장벽 완화는 국익에 도움을 준다?

- RCEP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스파게티볼 효과’의 완화는 거래비용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여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됨

- 비관세장벽의 완화 역시 FTA 또는 메가 FTA를 활용한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국가간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이 긍정적이라는 관점에 따른 평가임

- 국가별로 농산물의 안전 확보 수준이나 원산지 관리 방식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 표준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임

-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역(SPS),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은 비관세장벽으로서 철폐대상이지만, 해당 제도가 수입국 국민의 안전과 산업 이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제도임

○ 대응방안

- 모든 협상은 국익, 즉 국민의 안전과 산업 이익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함
- 현재의 협상 진행 절차를 보면, 어려운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 협상 참여자들이 국익보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협상은 합리적 토론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토론의 목적은 국익 보호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인도산 GM 면화 수입 확대, 일본 후쿠시마산 오염 수산물 수입 허용, 쌀 관세 인하 등의 요구는 국민 안전과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쟁점 3) RCEP, 농산물 수출 증대의 기회?

- RCEP 협상뿐 아니라 이전의 양국간 FTA 협상에서도 자주 나온 말이 ‘FTA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임
-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
- 첫째, FTA 체결이 농산물 수출 증대를 통해 농업 부문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 부문은 FTA 피해 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수출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증대 논리’는 이렇게 피해만 입을 수는 없다는 피해자의 한탄 섞인 자조일 뿐임
- 둘째, 농가가 FTA나 메가 FTA 체결에 반대하는 행위를 ‘수출 증대 기회’까지 무시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비합리적 행위로 오해할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FTA를 체결한 다수의 국가들, 그리고 RCEP 포함된 중국, 호주, ASEAN 회원국들 다수는 한국보다 농업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경쟁력이 한국보다 우수한 국가임. 농가가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헤비급 권투 선수와의 싸움을 회피하려는 것과 같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칠레 FTA 이후 시장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에서도 지금의 농업을 유지해 온 농민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냄. ‘수출 증대 논리’는 이러한 ‘우수한 농가’를 ‘나태한 농가’로 호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셋째, 최근 농식품 수출이 증대했지만 이는 원료 농산물 수출보다 김치,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 증대의 결과이고, 해당 가공식품들의 원료 중 상당 부분이 수입산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원료 농산물의 경우 인삼, 연초가 선전하고 있지만, KIEP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원료 농산물의 비교우위 경쟁력 수준은 RCEP 내에서 대다수 원료 농산물의 경쟁력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음

〈표 2〉 한국의 RCEP 회원국 대비 비교우위 지수 산출 결과

구분	아세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미국	세계
원료	0.07	0.03	0.01	0.04	0.08	0.02	0.01	0.04
가공재	1.35	1.93	1.36	1.74	1.81	2.42	1.09	1.18
부품	1.30	0.67	2.13	2.92	1.85	0.53	1.66	2.06
자본재	0.73	0.88	1.43	1.48	1.11	0.46	1.18	1.12
소비재	0.40	0.67	0.31	0.51	0.50	0.66	0.93	0.50

자료 : 라미령·김제국(KIEP, 2017. 2) 수정 후 인용

주 :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비교우위 지수가 1보다 큼을 의미. 비교우위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비교우위, 1보다 작을 경우 비교열위 상태임을 의미

○ 대응방안

- 언론이나 관련 기관은 수출 증대 논리를 오용하지 말고, RCEP 체결에 의한 농업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실 전달에 주력하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함
- 그러므로 RCEP으로 인한 농업 피해수준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공유되어야 하고, 이는 네 번째 쟁점과 연관이 있음

쟁점 4) 농민 또는 농민단체와의 협력 미비

- RCEP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 농업임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민 또는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농민단체와 관련 협의를 한 적 없음
 - 타국과의 협상에서 정보 우위력과 비밀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농가 피해는 없었을 것임
- 그런데 정부에서 굳이 협상을 시작해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비밀 유지 조건’을 제시한 후 농민단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긴밀히 대응할 필요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들은 바 없음
 - 반면 대기업과는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 협의회 등이 이루어졌음
- RCEP 협상과 관련하여 산업별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RCEP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결과 이외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음
 - RCEP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도 중요

○ 대응방안

- RCEP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또는 농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관련 연구 결과 공유

쟁점 5) 협상 대상국에 관한 정보 불확실성 문제

○ 중국이나 ASEAN 일부 국가의 경우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해당 국가의 농업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응 어려움

-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출입 통계의 신뢰성 미흡

○ 협상 대상국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은 한국 농업의 대응력을 약화시킴

○ 대응방안

- 협상 대상국의 농업 현황, 각 국가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한국시장에서 품목별 경쟁력,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보완 필요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5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한미FTA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 RCEP이 한미FTA를 따라해서는 안되는 이유 -

1. 공중보건과 한미FTA

- 한미FTA가 발효된지 5년이 지났음. 한미FTA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공중보건상의 규제 완화나 영리화·민영화의 큰 문제들 모두가 한미FTA의 영향아래에서 이루어짐. 즉 한미FTA는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제도> 로 기능해왔음.
- 이는 한미FTA 발효 전후에 이루어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중보건상의 규제완화와 민영화/영리화 조치들을 살펴보면 명백함.

(1)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수용함. 이는 2003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이후 20개월 미만(일본), 수입금지(중국), 30개월 미만 및 내장금지(대만) 등 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가의 수입조건과는 다른, 공중보건상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조치였음.
-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조치는 2008년 대중적인 항의 시위를 일으켰고 결국 재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위험물질(SRM) (거의 대부분을 사실상) 제외하는 조건으로 수입조건이 바뀌어 매듭지어짐. 현재 이 조건 즉 30개월 미만과 SRM 제외 수입조건이 전세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골드 스탠다드가 되어있음(일

본, 중국, 대만 등)

(2)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서의 약가제도 통보 및 유지

- 2011년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현중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 전문에 다음과 같이 등장함.
“김현중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다.”
-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인 약가 정책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거대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한미FTA 이고 또 그 협상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줌.

(3)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및 바이오 의약품 적용

-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linkage) 시행과 자료독점권 강화조치는 의약품 가격을 높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늘리고 한국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음.
- 뿐만 아니라 한미FTA 발효 3년 후 허가특허 연계조항의 발효시기에 미국정부는 입법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에 개입하였음.
- 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한미FTA 이행사항이 아니므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서 제외, 제네릭 독점권 도입 반대(한미FTA 이행사항이 아님), 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행정적 형사적 규제 조항도입, 부실특허 사후검증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특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은 한미FTA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포함시킨 것에는 미국대사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
-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2015년 2월 17일자 정승 식약처장에게 보낸 서한(참조 담당공무원,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힘.

“우리의 대화중에 우리는 한미FTA 협정의 18.9.5 조항(특허연계)에서의 의무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과 같이 나는 당신에게 한미FTA 협정 허가특허연계

조항 이행이 생물학제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에서 강제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싶다. 미국은 이 의무를 해치왁스만 법과 BPCIA 법을 통해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체계는 따라서 한미FTA와 일관된다”(참고자료 1. 2015.2.17. 리퍼트 서한 원문 참조)

- 이는 한미FTA 이후에도 미국정부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의약품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사건임. 이는 한미FTA가 미국정부가 자국기업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내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지속적인 통로라는 점을 확인시킴.

(4)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한미FTA 예외규정

-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이 집계 추진되었음. 이 영리병원 허용 및 관련 행정조항의 규제완화는 한미FTA 미래유보예외 규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규정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
-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4월 3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규칙규칙제정안’입법예고. 10월 29일 공포. 2014년 11월 이를 다시 완화하여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형태로 허용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음. 이는 한미FTA 발효 직후부터 추진된 규제완화임¹⁾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병원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이름만 외국인 병원이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함. 이를 통해 제주도에 중국 영리병원인 산얼병원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실패 후 동일한 내용의 중국계 국제녹지 영리병원을 허용함. 현재 사드문제 등으로 이 병원은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한 현안임.
- 이토록 집요한 영리병원의 추진은 한미FTA 투자규정과 예외조항 역진방지(래칫)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한미FTA 미래유보조항의 예외임. 즉 일단 외국인 투자병원을 설립하면 이는 한국 정부 관할 사안이 아닐 수 있음. (그림 1 참조)

1) 최종적 내용은 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 삭제 ②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③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 소속된 외국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등임.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림1] 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 보건의료분야 미래유보내용

(5)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허용과 한미FTA

-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함.

< 현행 허용 부대사업 및 확대 방안(예시) >	
▶ 현행 허용 부대사업	
·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 · 조사 연구,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 안경 조제·판매 · 은행업	·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업 · 구내식당, 이·미용업, 구내매점 · 숙박업·서점(시·도지사 공고 要)
⇒ 추가허용 사업 (예시)	
· 연구개발 활성화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 구매·임대 :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 의료관광 : 숙박업(시도지사 공고→시행규칙 직접 허용),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 의료연관분야 :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 기타 :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시도지사 공고→시행규칙 직접 허용)	

[그림 2]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

- 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영리병원의 직접 허용이 여론에 반대에 부딪쳐 어려워 지자 일종의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인데 이 영리자회사 또한 한미FTA 보건으로분야 미래유보조항에서 관련의무가 내국민대우 등 5개로 한정되어있어 ‘최소기준대우’나 ‘수용(Expropriation) 및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외국인이 투자한 경우 이를 되돌리기 힘든 문제가 발생함.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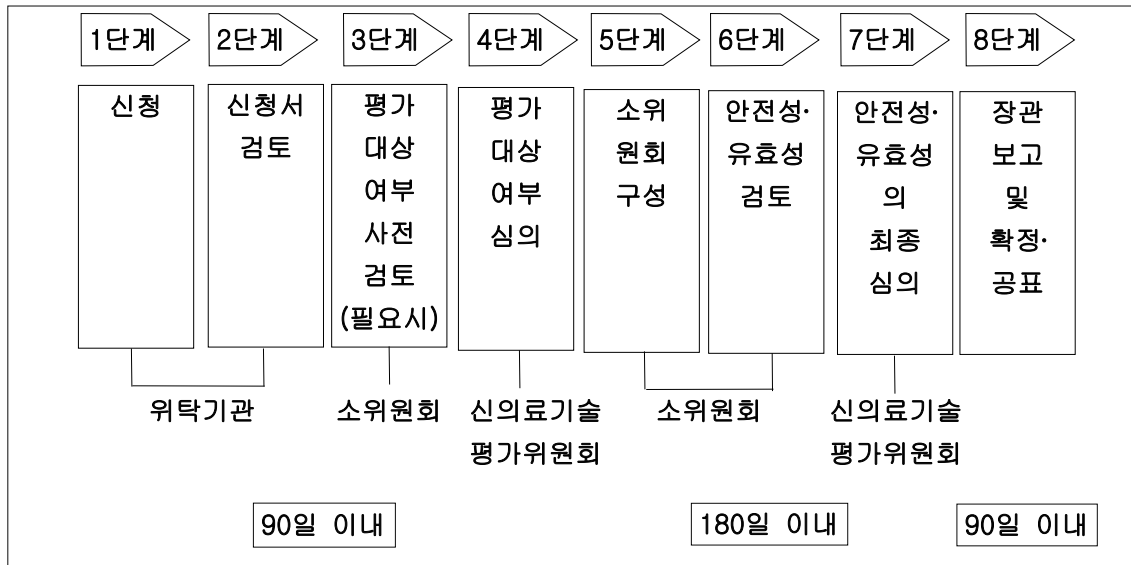
(6) 원격의료의 추진

- 박근혜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 원격의료 허용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이었음. 원격의료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오지나 시범사업 등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600만 명을 대상으로 이를 추진하려 했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2008년 및 2012년의 서비스발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의료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및 보건의료개인정보 산업적 활용 혹은 빅데이터 활성화)은 바로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체계를 모델로 하고 있음.
- 이 원격의료도 한미FTA의 미래유보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예외로 규정되어있다는 점. 즉 전국 8개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원격의료의 시행되면 이를 되돌리기 힘들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임(그림 1 참조)

(7)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신의료기술 평가과정 규제완화

- 신의료기술평가는 약 1년간에 걸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 한국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래 총 1,253건이 신청되었는데 반해 아예 평가 비대상 결정건으로 반려된 의료기술이 724건(57%). 529건이 최종 평가 완료 되었으며, 이 중 395건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고시. 즉 전체 신청건수의 31.5%만 신의료기술로 인정.
-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행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임.
- 의료기기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는 분야. 현재는 의료기기 도입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

- 이 건강보험 비적용항목으로 환자에게 시술될 가능성이 열리게 됨.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시행됨.
- 이러한 신의 기술 평가 간소화는 한미 FTA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적용대상이며 2016년 미국은 USTR 연례평가 보고서에 의료기기(medical device)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명시.



[그림 3]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 신약 허가절차 간소화는 한미FTA, 한EU FTA 체결이전부터 미국 및 유럽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 신약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을 어렵게 하여 국민들의 안전성과 비용부담을 대가로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약허가 과정 간소화는 안전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며 미국과 유럽, 일본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
- 특히 최근 3상 임상 시험면제나 연구자 임상의 상업적 임상 대체 등은 한국이 이미 전세계 신약의 임상시험 허브인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을 전세계 임상시험의 기니피그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조치임. 이번 차병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의 임상시험시 의료윤리는 전면적인 검토 대상임.

(8) 실손형 의료보험의 전면 규제완화 및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

- 한미FTA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입장은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이며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한국의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면 완화되었음²⁾.
- 3년마다 책정되던 민영의료보험료가 매년 책정되고 이 보험료 인상 규제마저 완전 자유화³⁾되어 2016년에는 4개 실손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18~27%까지 대폭 인상하였음. 이외에도 민영보험사의 병원과 직계약 및 직접지불제도 도입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의 도입, 보험정보원 도입,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평가, 노인형 의료보장보험 도입 등이 시도되었거나 시도되고 있음.
- 건강보험은 강화하지 않거나 약화시키며 민영의료보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정책임. 이는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임.
- 이러한 실손보험의 규제정책의 완화가 한미FTA 13장 금융서비스 조항의 이행이기도 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한미FTA 13.6 신금융서비스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금융상품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즉 한국정부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 즉 규제완화조치는 다른 한편 미국에서 허용되는 보험상품의 한국의 허용임.

제 13.6 조 신금융서비스²⁾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그림 4] 한미FTA 13장 6 신금융서비스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015~20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10.26

3)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조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음.

-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부는 개인질병정보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등에서도 거론하고 있음. 이 경우 개인질병정보가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법화될 수 있음.

(9) 담배규제, 알코올규제 및 식품 라벨링 문제와 한미FTA

〈표 3〉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협회 TPP 건강영향평가팀 보고서 요약(2015.2)

1) 의약품

TPP는 호주 의약품제도(PBS)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에게 약값 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는 처방된 의약품을 쓸 수 없게 만들고 의료비용을 다른 생필품(식료품, 주거 등) 비용보다 부담이 크게 만들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만성 질환자, 청년들, 원주민 등이 취약그룹에 포함될 것이다. 공동체의 건강지위 악화, 늘어나는 입원과 사망률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2) 담배

TPP 규정은 정부의 담배광고 규제 및 제한 규정 능력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흡연율의 증가를 불러와 담배관련 건강위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담배관련 건강위해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청년 들이나 저소득층 등의 취약그룹등에 위협할 수 있다.

3) 알코올

TPP의 몇가지 조항은 알코올 접근, 마케팅, 임신 중 음주 경고 라벨과 같은 알코올 규제 방법에 대한 규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 특히 청년들의 알코올 소비와 남용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 이는 알코올관련 질병들을 증가시키고 정신건강과 공동체의 사회적 외해를 불러올 수 있다.

4) 식품

TPP의 조항들은 정부가 새로운 식품 라벨/표시 정책을 제한하고 해로운 음식소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과체중/비만율과 연관되고 이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협회에 대한 TPP에 대한 우려 중 의약품, 담배규제, 알코올규제, 식품라벨링 문제는 TPP 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함한 한미FTA가 발효된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임.
- 담배갑 금연문구 및 경고그림 문구 적용에 대해 1994년 캐나다 정부가 민담뱃갑 정책을 포기했던 전례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필립모리스가 상표권 보호

를 이유로 투자자 국가 분쟁제도 등을 통해 제동을 건 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최근 시행된 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뭇갑 경고그림이나 전시규제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채택되었고 이마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많은 진통을 거쳤음.
- 식품 라벨링의 문제는 한미FTA와 동시에 체결된 <LMO에 대한 한미간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사실상 한국의 농산물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식품규제이고 이 경우 설탕, 소금, 지방 및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표시제가 중요한 규제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식품기업규제의 경우 한미FTA 및 한-EU FTA가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큼.

(10) 미세먼지규제와 자동차 특별세 문제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가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폐지되었음.

(11) 소결

- 한미 FTA를 평가하기에 5년이라는 기간은 여전히 짧은 기간임. 그러나 한국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공중보건 분야의 민영화조치나 규제완화조치, 나아가 필요한 규제강화조치 추진의 걸림돌 등을 살펴보면 한미FTA는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제도환경>임이 분명히 드러남. 중요한 규제완화 혹은 민영화 조치가 모두 한미FTA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의 공중보건에서 한미FTA는 병원영리화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실손의료보험 규제완화,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식품표시제 등 여러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음.
- 특히 박근혜정부는 한미FTA의 규제완화의 완결판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공중보건상의 규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법률을 추진하였음.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불필요한 규제를 기재부가 알아서 모두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내용의 법률임, 규제프리존법은 한국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규제프리존에서 허용되며(4조)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놓인다(3조)고 규정하고 있음⁴⁾. 이는 한국의 법체계위에 놓여있고 한국의 법을 전체적으로 재규정하는 ‘비밀

4) 오마이뉴스, 생명·안전에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되야. 전진한. 2017.2.19

헌법'이라 불리는 한미FTA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발전법을 특정지역에서 시행하려는 법안임.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이 법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한미FTA는 큰 영향 없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한국의 공공서비스 전체,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요구 등에서 자동차 등의 상품만이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부문 등의 악영향을 고려해볼 때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할 협정임.

2. RCEP과 공중보건

- 한미FTA의 경우 국내의 보건의료관련 법률개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던 것은 국내의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규정은 이미 미국식으로 상당히 강화되어있었던 상황임. '금융자유화'조치도 마찬가지임. 또한 한국은 경제력으로 제도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음.
- 그러나 한미FTA가 현재까지 체결된 FTA 중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협정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임. 이 협정을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면 공중보건상의 재앙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미FTA를 기준으로 한국정부가 투자, 지적재산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협정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중보건상의 정책주권을 포기하고, 자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임.
- RCEP의 실행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리인이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서한 (2015.2.17.)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Korea

February 17, 2015

Dear Minister 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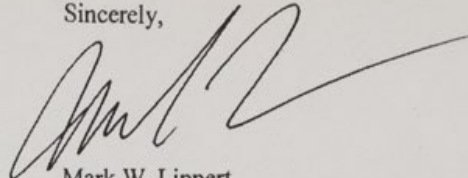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recently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several issues of importance to both our countries.

During our conversation, we discussed obligations under Article 18.9.5 (patent linkage)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As a follow-up to that, I would like to assure you that KORUS patent linkage obligations cover all pharmaceutical products, including biologics,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meets this obligation through the Hatch Waxman Act and 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A), and the U.S. system therefore is KORUS-consistent.

I understand that on March 3 the National Assembly will make its final decision on legislation regarding Korea's patent linkage system, including proposals that, if adopted, would carve out biologics from Korea's patent linkage requirements. The distinct challenges innovators face in developing biological pharmaceuticals call for particular protections, including a system of patent linkage, which ensures that there is adequate time, opportunity, and mechanisms to work through patent issues before potentially infringing pharmaceutical products are released into the marketplace. As you know, we are also seeking such protections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While we appreciate the hard work by your government to develop a patent linkage system in time for the March 15, 2015 KORUS deadline, I would like to reaffirm that it is critical that Korea adopts a patent linkage system that covers all pharmaceutical products, in line with KORUS.

We look forward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as Korea implements its patent linkage system and,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your government as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economic partnership and global strategic alliance.

Sincerely,



Mark W. Lippert

The Honorable
Chung Seung,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cc: Director Jeong, Yong-ik, Pharmaceutical Approval Patent Management Division, MFDS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6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한미FTA 및 RCEP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챕터의 문제점

1. 한미FTA, TPP, RCEP의 전자상거래 조항

- 2007년 타결된 한미FTA 15장 전자상거래 챕터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¹⁾

ARTICLE 15.1:GENERAL
ARTICLE 15.2: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ARTICLE 15.3:DIGITAL PRODUCTS
ARTICLE 15.4: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ARTICLE 15.5:ONLINE CONSUMER PROTECTION
ARTICLE 15.6:PAPERLESS TRADING
ARTICLE 15.7: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8: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ARTICLE 15.9:DEFINITIONS

-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4장 전자상거래 챕터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음.²⁾

Article 14.1: Definitions
Article 14.2: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14.3: Customs Duties
Article 14.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14.5: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1)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eng/36-15ECommerce.pdf

2) <https://www.mfat.govt.nz/assets/Trans-Pacific-Partnership/Text/14.-Electronic-Commerce-Chapter.pdf>

Article 14.6: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Article 14.7: Online Consumer Protection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4.9: Paperless Trading
 Article 14.10: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rticle 14.12: Internet Interconnection Charge Sharing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rticle 14.14: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Article 14.15: Cooperation
 Article 14.16: Cooperation on Cybersecurity Matters
 Article 14.17: Source Code
 Article 14.18: Dispute Settlement

○ 한미FTA와 TPP의 조항 비교 : 한미FTA에서 협력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었으며, 한미FTA에 없던 조항이 새로 추가됨.

유 형	TPP 조문	한미 FTA	비 고
일반규정 (2)	•제1조(용어 정의)	일반규정	+
	•제2조(일반조항: 협정 적용범위 및 예외)	일반규정	+
강행규정 (11)	•제3조(디지털재화에 관한 영구 무관세)	강행규정	
	•제4조(디지털재화에 관한 비차별대우) 단, 보조금 지급 및 방송(프로그램 전송) 적용배제	강행규정	
	•제5조(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부재	+
	•제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강행규정	
	•제7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규정	+
	•제8조(개인정보보호)	부재	+
	•제11조(국가 간 정보이전, 필요성심사)	협력규정	+
	•제13조(컴퓨팅설비의 위치, 필요성심사)	부재	+
	•제14조(스팸메시지)	부재	+
	•제17조(SW 소스코드)	부재	+
	•제18조(분쟁해결)	부재	
협력규정 (5)	•제9조(전자무역)	협력규정	
	•제10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협력규정	
	•제12조(인터넷접속료 분담)	부재	+
	•제15조(회원국 간 공동협력)	부재	+
	•제16조(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협력)	부재	+

(출처 : 이한영, "전자상거래 협상 및 동향 TPP 규범 및 핵심쟁점 -". 전경련 제3차 대외전략협의회, 2016.1.28)

- RCEP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6년 7월 유출된 RCEP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의 Terms of Reference(TOR), 2017년 5월 공개된 호주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의견수렴³⁾을 감안했을 때, TPP의 의제가 RCEP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2016.7 RCEP e-commerce 워킹그룹의 Terms of reference(TOR) 초안 유출⁴⁾
- 2015.2.8 방콕에서 개최된 RCEP 7차 협상의 전자상거래 전문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워킹그룹(WGEC)의 설립을 무역협상위원회(TNC)에 권고함.
- 2015.2.10 TNC는 전자상거래 전문가 그룹이 WGEC 설립을 위한 TOR을 초안을 검토하고, RCEP 8차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을 워킹그룹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TOR에 포함된 의제들은 다음과 같음. TPP 의 대부분의 조항이 RCEP의 의제로 채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 General Provisions
 - Cooperation
 -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2. Trade Facilitation
 - Paperless Trading
 - Electronic Signature and Digital Certification
3.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Electronic Commerce
 - Online Consumer Protection
 - Online Personal Data Protection
 -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s
 - Customs Duties
 -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4. Promoting 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 Prohibition on Requirements Concerning the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Prohibition on Requirement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Source Code
 -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3) <http://dfat.gov.au/trade/agreements/rcep/Pages/rcep-discussion-paper-on-electronic-commerce-may-2017.aspx>

4) <http://www.bilaterals.org/?rcep-draft-e-commerce-chapter&lang=en>

2. 전자상거래 챕터 주요 조항의 문제점

- RCEP 협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TPP 전자상거래 챕터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

(1) 개인정보 보호

- TPP 관련 조항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ribution that this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4. Each Party should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how:
 -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5.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se mechanisms may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 whether accorded autonomously or by mutual arrangement, or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y such mech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 개인정보의 국경간의 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①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음. 한국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 이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자의적인 혹은 정당성없는 차별 혹은 무역에 대한 우회적인 제한’이어서는 안되며, ‘필요 이상으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해서는 안됨. 즉, 일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역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인권(개인정보 보호)이 무역의 하위 규범으로 종속됨.
- 예를 들어, 국외 이전을 위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조건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국과 같이 Opt-in 이 아니라, Opt-out 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클라우드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도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함. (클라우드법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제가 아닌 경우)

(2)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제한

○ TPP 관련 조항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 한국 내에 컴퓨팅 설비를 국내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이 관련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법 관련하여, 구글과 한국 정부 사이에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공간정보법에 따른 측량정보 등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수집·소유·처리하는 공공정보는 전자상거래 장(chapter)의 적용면제 대상”(이한영, 2016)이고, 정보통신망법 제51조에 따른 중요 정보의 경우에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상거래 챕터의 이 조항에 따라 민간에서 수집하는 중요 정보들의 국외 이전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NSA의 대량 감청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일부국가에서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데이터 현지화 정책은 일국의 정부가 검열과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일반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협하고, 인터넷의 분절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데이터 현지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무역’의 하위 규범으로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Source code 공개 제한

○ TPP 관련 조항

Article 14.17:Source Code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4.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 국내에서 소스코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암호모듈 검증의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69조에 의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이 암호모듈 검증을 담당하는 것의 적절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가 공공목적(이용자 보호, 보안 등)으로 소스코드를 검증할 수 없게 됨.

3. 결론

- RCEP 전자상거래 챕터는 TPP의 관련 조항을 의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RCEP은 한미FTA plus 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TPP의 전자상거래 조항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공공정책을 ‘무역’의 하위

규범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여타 공공정책을 무역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분쟁을 제기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등과 관련된 공공정책은 그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인권 보호 및 공적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RCEP과 같은 무역협상은 이러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적절한 공간이 아님.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토 론 7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MEMO

